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2013.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손 원 익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홍 성 열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제도	9
1. 협동조합의 특성 및 설립현황	9
가. 협동조합의 특성	9
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10
2. 일반협동조합 관련 제도	14
가. 설립 및 운영	14
나. 과세제도	16
3.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제도	16
가. 설립 및 운영	16
나. 과세제도	21
III. 협동조합과 기타 법인과의 비교	23
1. 사회적기업	23
가. 사회적기업 현황	23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사후관리	27
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34
2. 비영리법인	40
가. 비영리법인 현황	40
나. 비영리법인 세제	41
3.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단체의 비교	45
가. 협동조합과 일반법인의 비교	45
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 비영리법인의 비교	46

IV. 외국의 협동조합 과세제도	58
1. 일본	58
가. 협동조합의 범위 및 특징	58
나. 협동조합세제	63
2. 캐나다	67
가. 협동조합의 범위 및 특징	67
나. 협동조합세제	69
3. 프랑스	72
가. 협동조합의 범위와 특징	72
나. 협동조합세제	75
4. 이탈리아	76
가. 협동조합의 범위와 특징	76
나. 협동조합세제	78
5. 스페인	81
가. 협동조합의 범위와 특징	81
나. 협동조합세제	84
V. 협동조합제도의 국제비교	86
1. 설립 및 운영	86
2. 과세제도	87
가. 세율	87
나. 배당금 및 비분할 적립금	88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90
참고문헌	93

표 목 차

〈표 II-1〉 협동조합 설립 건수 현황.....	11
〈표 II-2〉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현황.....	11
〈표 II-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및 인가 현황	12
〈표 II-4〉 분야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4년 1월).....	13
〈표 II-5〉 협동조합 정관 필수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4
〈표 III-1〉 사회적기업 분야별 현황.....	25
〈표 III-2〉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	25
〈표 III-3〉 사회적기업 및 고용자 수.....	26
〈표 III-4〉 인증연도별 정부지원금 규모.....	26
〈표 III-5〉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지원금 규모.....	27
〈표 III-6〉 연차별 지원금.....	38
〈표 III-7〉 사업개발비 지원 규모.....	39
〈표 III-8〉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수.....	41
〈표 III-9〉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의 설립 관련 규정.....	48
〈표 III-10〉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비교.....	50
〈표 III-11〉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교.....	51
〈표 III-12〉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지원제도 비교.....	53
〈표 III-13〉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차이 (행적적).....	55
〈표 III-14〉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차이 (재무적).....	57

〈표 IV-1〉 일본의 연도별 협동조합 수.....	61
〈표 IV-2〉 일본의 조합제도의 개요	62
〈표 IV-3〉 일본의 법인세율.....	64
〈표 IV-4〉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현황(2013년 현재).....	69
〈표 V-1〉 주요국의 협동조합제도 특징	87
〈표 V-2〉 주요국의 협동조합 적용세율.....	88
〈표 V-3〉 주요국의 협동조합 과세제도.....	89

I. 서론

- 최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형태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함¹⁾
 -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활동으로는 공정무역,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한 가지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주목하게 되었음
 - UN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함과 동시에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음
 -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8개의 개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분야가 제한되어 있었음
 - 이로 인해, 협동조합 형태를 지향하고 협동조합적인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법인격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음²⁾

1) 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3(http://www.gsef2013.org/about/kr_about_2.asp?sMenu=abo2)

2) 예를 들면, 건설근로자,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이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단체임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두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함
 - 일반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기존의 상법상 회사와 동일하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리활동이 가능함
 - 다만, 조합원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님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존의 비영리분야에서 담당하던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배당이 금지되는 등 일반협동조합보다는 공익성이 보다 강화된 조직형태임

- 협동조합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복지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경과한 2013년 12월 현재 협동조합 수가 3,057개에 이르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기업 형태인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협동조합 과세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협동조합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과세제도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일반협동조합과 일반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파악함
 - 제4장에서는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협동조합제도의 특성 및 과세제도를 소개함
 - 제5장에서는 조사대상국가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제도 및 협동조합 과세제도를 비교하고 제6장에서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함

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제도

1. 협동조합의 특성 및 설립현황

가. 협동조합의 특성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 즉, 협동조합이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등의 특성을 지닌 조직형태임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가능한 사업조직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 체계는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에서 8개의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중소기

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개별법이 기본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휘함
 - 다만,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기존의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에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일반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음
- 요건을 만족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요건이라 함은 ① 소규모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③ 각 조합원등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④ 조합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협동조합 설립현황

-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2년 11월 말 현재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이고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받은 상태임³⁾

〈표 II-1〉 협동조합 설립 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처리건수 (9월말)	신청/처리건수 (10월말)	신청/처리건수 ¹⁾ (11월말)
일반협동조합	2,598/2,533	2,811/2,750	3,003/2,944
사회적협동조합	131/78	127/91	132/102
연합회	11/10	12/10	13/11
총 계	2,740/2,621	2,950/2,851	3,148/3,057

주: 1) 잠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12.2.)

- 협동조합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892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서비스업(344건, 11.7%), 농어업(288건, 9.8%), 제조업(277건, 9.4%)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협동조합 출자금 규모를 보면,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평균 1,893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평균 4,032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임
 - 출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2〉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현황

(단위: 개, %)

설립시 출자금	100만원 이하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2,000만원	2,000만원 초과	계
협동조합 수	603 (19.8)	879 (28.9)	507 (16.6)	329 (10.8)	728 (23.9)	3,046 (100)

주: 1. 전체 협동조합 설립건수 3,057건 중 연합회 11건은 제외
 2. () 안은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12.2.)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본법 시행 1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정보 통합 서비스-', 2013.12.2.

□ 2013년 11월 30일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청 건수는 132건, 처리건수는 102건임

-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전체 협동조합 수의 3%에 불과함
- 소관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2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21개, 14개, 12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및 인가 현황

(단위: 건)

연번	소관 부처	신청/인가 건수 누계 (9.30일 기준)	신청/인가 건수 누계 (10.31일 기준)	신청/인가 건수 누계 (11.30일 기준)
1	기획재정부	20/16	21/18	22/21
2	교육부	21/14	21/14	20/14
3	미래창조과학부	-	-	1/-
4	외교부	1/1	1/1	1/1
5	안전행정부	3/2	3/2	3/2
6	문화체육관광부	9/5	7/6	8/6
7	농림축산식품부	5/5	7/5	7/5
8	산업통상자원부	2/2	3/3	4/3
9	보건복지부	28/8	21/9	19/12
10	환경부	5/3	4/3	4/3
11	고용노동부	26/15	27/21	31/25
12	여성가족부	4/3	5/4	5/4
13	국토교통부	1/1	1/1	1/1
14	해양수산부	1/-	1/-	1/-
15	중소기업청	3/2	3/3	3/3
16	산림청	2/1	2/1	2/2
총 계		131/78	127/91	132/102

주: 2013.11.30.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12.12.

- 사업분야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35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0개로 일반적으로 비영리활동이 활발한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전통적으로 비영리활동이 활발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이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분야라고 보기 어려운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4〉 분야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4년 1월)

(단위: 개)

업종	설립 개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교육서비스업	35
국제 및 외국기관	4
농업, 어업, 임업	9
도매 및 소매	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료기관은 7개)	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숙박 및 음식점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4
제조업	4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서비스업	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
계	127

자료: <http://www.cooperatives.go.kr>,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2. 일반협동조합 관련 제도

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의 설립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음
 - 정관은 설립동의자 모집 전후로 작성할 수 도 있지만 창립총회 개최 이전까지는 작성해야 함

〈표 II-5〉 협동조합 정관 필수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순번	내 용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의 기관으로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두고 있음
 -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임
 -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임

- 조합원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가입 가능하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됨
 -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상), 감사(1명)을 말하며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반적으로 임원은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하에서는 겸직이 가능함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예를 들어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 조합원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겸직가능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사업의 이용에 관해서는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 발생시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
 - 잉여금 발생시에는 이월손실금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함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함

나. 과세제도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일반법인은 세법 적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도 없음
- 기본법 제정 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었으나 2014년 1월 14일 「중소기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편입됨⁴⁾
 -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게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됨

3.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제도

가. 설립 및 운영

1)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및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함⁵⁾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4호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⁶⁾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①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동의자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함⁷⁾
 -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기준을 적용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고⁸⁾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⁹⁾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함¹⁰⁾
 - 출자금 납입총액은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할 수 있음¹¹⁾

6)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시도지사 신고에 의함

7)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8)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9)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않음

10)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함

11)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고시된 내용은 없음

- 설립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마다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¹²⁾
 -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와 관계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¹³⁾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인가, 합병·분할인가, 해산신고, 청산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의 취소,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및 과태료 부과
 - 이러한 위임규정에 의해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설립허가기관)에서 동일한 관리감독을 적용받게 됨

2)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¹⁴⁾
 - 주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함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12)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5항

13)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21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이 금지되지만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¹⁵⁾
 - 소액대출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¹⁶⁾
 -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¹⁷⁾

15)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

16)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

17)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함(협동조합기본법 제17조)

-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처리하기 위한 경우
-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조합원의 총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총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기간(1년 3개월 이내) 동안 전년도 총공급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였지만,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이라는 예외규정을 둔 것임
- 그러나 예외규정의 적용이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조합원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비영리법인 및 국고 등에 귀속되어야 함
 - 즉,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국고 중 어느 하나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¹⁸⁾
 - 협동조합의 경우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다른 비영리법인은 설립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이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감독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외)

18) 일반협동조합은 기본법에서 별도의 감독에 관한 규정은 없고 상법등에서의 규정을 준용함

음¹⁹⁾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감독의 결과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특정 사유라 함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② 2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임

나. 과세제도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으며 잉여금에 대한 배당도 불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²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에 추천 요청을 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고 기획

19) 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

20)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재정부가 지정하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 협동조합 기본이념인 ‘자주’, ‘자립’, ‘자치’에 입각하여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 및 지원원칙에는 예산(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의한 직접지원은 없음

Ⅲ. 협동조합과 기타 법인과의 비교

- 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일반 영리법인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므로 일반협동조합과 일반법인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을 각각 비교하고자 함
 -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기업 목적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므로 이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비교에 앞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법인의 특성 및 과세제도를 살펴봄

1.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현황²¹⁾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21)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pp. 1~2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형태를 지니는 것은 아님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²²⁾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므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있으므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야 함
 -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가 가능함
 - 그러나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 목적만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은 제외됨
- 사회적기업은 일반영리기업과 달리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음
 - 의사결정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2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2012년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723개로, 이 중 환경, 문화, 사회복지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1〉 사회적기업 분야별 현황

(단위: 개)

분야	간병가사	보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육	기타	계
기업 수	58	22	109	122	98	12	44	258	723

주: 2012년 11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 2013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로 보면, 상법상 회사가 47%를 차지하고 있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임

〈표 Ⅲ-2〉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

(단위: 개)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계
기업 수	16	13	82	113	161	338	723

주: 2012년 11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 2013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사회적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총 고용자와 취약계층 고용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수의 증가율에 비해 고용자 수(취약계층 고용자 수)의 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 사회적기업 및 고용자 수

(단위: 개, 명, %)

	사회적기업 수	증가율	사회적기업 총 고용자 수	증가율	취약계층 고용자 수	증가율
2007	50		2,539		1,403	
2008	208	316	8,329	228	4,832	244
2009	285	37	11,150	34	6,467	34
2010	501	76	13,443	21	8,227	27
2011	644	29	16,319	21	10,018	22
2012	723	12	17,813	9	10,859	8

주: 2012년 11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 2013

- 연도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820억원 규모에서 2012년에는 990억원 규모에 달함

〈표 Ⅲ-4〉 인증연도별 정부지원금 규모

(단위: 천원)

		2010	2011	2012
인증 연도	2007	9,832,953	6,312,442	5,449,079
	2008	34,911,218	24,698,081	16,808,924
	2009	12,833,570	10,051,677	8,346,153
	2010	24,824,375	29,329,677	28,620,053
	2011	n.a.	18,239,212	21,549,344
	2012	n.a.	n.a.	18,234,325
계		82,402,116	88,631,089	99,007,878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13, p. 80

- 2012년 기준으로 총지원금 규모 중 34.9%에 해당하는 345억원 규모가 영리법인인 상
 법상 회사에 지원되었고 그 외 65%는 비영리 성격의 단체에 지원되었음
 ○ 지원 규모 면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을 초과하고 있음

〈표 Ⅲ-5〉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지원금 규모

(단위: 천원, %)

조직형태	지원금	비중
민법상법인	24,323,418	24.6
비영리민간단체	12,347,687	12.5
사회복지법인	24,182,778	24.4
상법상 회사	34,559,085	3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63,076	1.2
영농조합법인	2,431,834	2.5
계	99,007,878	100.0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13, p. 81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사후관리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²³⁾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7가지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요건은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⑥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⑦ (상법상 회사)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구분하여 검토함²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²⁵⁾
 -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3)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pp. 5~45

2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2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야 함²⁶⁾

-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음
 - 개인사업자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직 자체가 소멸될 수 있고 채무 발생 등 다양한 사정으로 행위능력이 소멸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이익금 사용 등 회계 투명성 확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사회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닌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등도 인증받을 수 없음
 -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관의 경우, 설립주체가 민간부문이어야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독립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분비율 및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함
 -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 모법인의 사업단이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단 소속이어야 하며, 모법인 소속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음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인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유급근로자를 5인 미만 고용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26) 비영리단체라 함은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임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2인 이상 고용하면 인증이 가능함

다)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²⁷⁾에게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므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사회서비스²⁸⁾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므로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심사기준은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수혜대상자의 범위나 특성, 대체재의 존재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함

27)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따른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②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28)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육 서비스, ②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⑥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⑦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임

- 지역사회공헌형은 그 목적에 따라 인증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 거주자인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혼합형이란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것으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함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 6개월간 평균이 아닌 매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인증이 가능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

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이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 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함
 -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여야 신청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노무비 대비 3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함

바)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출자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등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포함

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되며, 배분가능한 이익이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의미함
- 즉, 상법상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3분의 1에 한해 주주 등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며,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인증 처리함
- 이윤의 재투자 범위는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임
- 인증 이후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부정수급에 따른 인증 제한

- 고용노동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인증에 제한을 둠
 - 고의성 없는 50만원 미만은 6개월간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은 3년간 인증 제한
 - 부정수급 2회 이상인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2) 사후관리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²⁹⁾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³⁰⁾
 -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④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임
 -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³¹⁾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이내에 다시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³²⁾에 통보하여야 함³³⁾

29)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제1항~제4항

3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

31)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①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임

32) 고용정책심의회라 함은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위원장(노동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임. 고용정책심의회는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고용정책, 직업안정, 고용보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요건·심의사항 등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14조에 규정하고 있음

3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6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교육훈련의 실시 업무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4대보험 지원, 인건비 및 전문 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 혜택이 있음

1)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4년간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³⁴⁾
 -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게 적용함
 - 세액감면기간 중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³⁵⁾
 -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이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함
 - 고용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

3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감함

-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함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함

□ 사회적기업은 지정기부금 수취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일반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³⁶⁾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임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함

2) 재정지원

가) 4대보험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지원 내용은 4대 사회보험료³⁷⁾ 중 사업주 부담분임³⁸⁾

□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임

- 사회적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³⁹⁾ 등은 사회보험 지

3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함

38)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분에 해당할 수 있음

39)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

- 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원이 제한됨

- 지원대상 근로자는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승인받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함

나)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⁴⁰⁾

- 2013년 1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예비사회적기업⁴¹⁾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②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1년간 지원을 중단함

40)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pp. 121~136

41)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과 부처형이 있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장이 지정함.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가능하나 최대 지정기간은 3년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인 증 요 건	공통점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차이점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②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③ 정관·규약을 갖출 것	해당 없음
지 원 제 도	공통점	① 경영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인건비 지원, ④ 사업개발비 지원	
	차이점	① 세제지원, ② 사회보험료 지원, ③ 전문인력 채용지원, ④ 시설비 등 지원,	해당없음

자료: 송파사회경제적허브센터(<http://www.songpase.org/sub/1-1-2.html>)

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임

- 참여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공개함⁴²⁾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
 - 참여근로자 인건비는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임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은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은 차등 적용함
 -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100%, 2년차 90%
 - －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지원기간은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최대지원기간은 5년임

4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서 제외됨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단, 바우처사업 외에 유료사업에 한해 참여 가능)
-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
- － 과거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표 Ⅲ-6〉 연차별 지원금

(단위: 천원)

연차별 지원 비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100%	90%	90%	70%	50%
월 지급액 (1인당)	1일 8시간 근로자	1,107	996	996	775	553
	1일 4시간 근로자	553	498	498	387	276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함
-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⁴³⁾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임
 -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유급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임
 - 지원기간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 최대 5년임
 - 지원금액은 월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되 전문인력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함⁴⁴⁾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예비사회적기업 1차년도 20%, 2차년도 30%, 사회적기업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43) 전문인력이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임

-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③ 항목 ①에 해당하는 각 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44) 〈지원금예시〉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년차 지원금은 120만원, 2년차 지원금은 105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년차, 2년차 모두 지원금은 200만원
-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년차 지원금은 120만원, 2년차 지원금은 105만원, 3년차 75만원
-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년차 지원금은 200만원, 2년차 지원금은 200만원, 3년차 150만원

다) 사업개발비 지원⁴⁵⁾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수행함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이며, 사업참여 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함
 - 지원금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⁴⁶⁾

〈표 Ⅲ-7〉 사업개발비 지원 규모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 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지원	1천만원	
B 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 유형	사업 성장 단계 기술 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45)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pp. 317~322

46) 사용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2. 비영리법인

가. 비영리법인 현황

-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음⁴⁷⁾
- 비영리법인은 각각의 설립근거법에서 설립목적 및 설립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음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임
 - 그 밖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정도 비영리법인에 속하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됨
-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별로 관할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인의 수를 알기 어려움
 -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공익법인의 수를 집계하고 있고 2012년 현재 29,509개에 이룸

47)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표 Ⅲ-8〉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수

(단위: 개)

사업목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7,500	27,793	27,811	28,905	29,132	29,170	29,509
종교보급	17,135	17,591	17,586	17,958	17,863	17,753	17,708
사회복지	2,617	2,692	2,693	2,830	2,895	3,028	3,093
교육사업	1,858	1,751	1,745	1,749	1,735	1,681	1,702
학술·장학(자산)	2,837	2,937	2,960	3,163	3,134	3,229	3,394
예술문화	493	561	572	673	773	658	743
의료목적	478	495	503	610	671	700	759
기타	2,082	1,766	1,752	1,922	2,061	2,121	2,11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나. 비영리법인 세제

1) 법인세

가) 수익사업 과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니며,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음⁴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제조업 등의 사업소득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채권·증권(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을 매도함에 따

48)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른 매매익⁴⁹⁾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⁵⁰⁾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금액⁵¹⁾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의 50%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를 두고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함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학병원 등⁵²⁾의 경우 수익사업의 100%까지 고유목적사

49) 다만,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5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항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

52) ①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③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④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⑥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⑦ 국제행사조직위원회

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⁵³⁾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수익사업의 6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인구 수 3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당기순이익 과세하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 법인이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2)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⁵⁴⁾

- 그러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 당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⑧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5%⁵⁵⁾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⁵⁶⁾

- 다만,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출연 당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⁵⁷⁾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료보건의용역, 교육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⁸⁾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과 같음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⁵⁹⁾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5)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 적용

5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57)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10% 적용

5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5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음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⁶⁰⁾

3.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단체의 비교

가. 협동조합과 일반법인의 비교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일반법인과의 세법 적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협동조합에 특별한 세제혜택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기존의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세율은 9%로 하고 있음
 - －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0)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4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법정적립금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와 달리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야 함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의무가 있음
- 조합운영비를 조달할 경우 회계 및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 대상임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들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획재정부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12월 29일 발표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의 비교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면이 있어 각각을 비교하고자 함

1) 법적 성격 및 설립 절차

-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특별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근거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법인, 조합, 회사 및 합자회사,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인증절차를 거쳐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획득

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 형태의 측면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님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비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사업별로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 설립절차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기존 비영리법인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함⁶¹⁾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면서 기존의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만으로 설립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차이는 없음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특정 사업목적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설립이 가능하므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적 실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은 동일하고 설립근거법이 다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에서 정의하는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설립과 관련하여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61) 법령에서 허가와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의 제한을 해제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음. 법률상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이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 구분하고 있음

〈표 Ⅲ-9〉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의 설립 관련 규정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근거법과 법적 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법인·조합(민법), 회사·합자조합(상법), 법인·비영리민간단체(특별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단법인, 재단법인(공익법인) - 특별법: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증	재정부장관의 설립 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허가 - 공익법인: 주무관청의 허가 - 학교법인: 교육부장관의 허가 -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시·도지사의 허가

2) 운영 및 감독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
 -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은 사회적기업과 동일함
 - 차이점은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조직 목적이 무엇이든 사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임

- 비영리법인이라는 동일한 법적 형태를 갖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사업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으로서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그 밖에 공익을 증진하는 사업

으로 열거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공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특이한 점은 주사업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사업이 전체 영업활동의 40% 이상만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으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임
- 상대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내용으로 제한이 됨
- 이러한 사업분야의 확대에 의해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민간복지에서의 역할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는 일부 조세지원 외에 재정지원은 없는 상태이지만 사회적기업에는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제공형이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반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체의 7.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⁶²⁾
- 이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고용을 포함한 영업활동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증사회적기업의 수가 2010년 이후 매년 120개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까지 3,000개까지 늘리고자 하는 정부 목표를 감안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 p. 242.

〈표 Ⅲ-10〉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비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②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②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①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② 공익법인: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사업 내용	법적 형태에 따라 적용	제한 없음: ①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가능, 의료기관 가능 ② 주사업 ¹⁾ 이 전체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함	설립근거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제한됨
법정 적립금	법적 형태에 따라 적용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각 개별법에 적립금 규정 있음
잔여 재산 청산	법적 형태에 따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에 귀속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목적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공익 법인 ④ 국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감독 및 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회계연도말 고용노동부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업무상황·장부·서류 등 검사	주무관청에 예·결산 자료보고 의무

주: 1) 주사업은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과 거의 유사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이용주체 및 의결방식에 있음

- 이용주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만 이용이 가능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게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 의결방식에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인데, 총회의 구성은 이 사장 1인과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원은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으로 갖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고 이사회는 5~15인의 이사로 구성 되므로 민주적인 의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임

〈표 Ⅲ-11〉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교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이용자	원칙: 조합원만 이용가능 예외: 일정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 이용 가능, 보건·의료서비스는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 이용 가능	이용자에 대한 제한 없음
의결방식	- 총회에서 의결 ①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 ② 조합원 1인 1표 의결권	-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① 이사회는 5~15명의 이사로 구성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
적용법률	협동조합기본법과 해당 비영리업무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 동시 준수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률 준수

3)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
 -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은 4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한도는 일반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의 50%,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학병원은 수익사업의 100%임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기존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는 동일하게 적용됨
 - 지방세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동산취득세 50% 경감, 등록면허세 50% 경감, 재산세 25%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비영리사업별로 감면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복잡하게 되어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존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지만, 그 외의 분야에 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조세지원 혜택과 더불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협동조합 형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각의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세지원이 모두 적용되므로 중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이 ‘자주’, ‘자립’, ‘자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 Ⅲ-12〉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지원제도 비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영리성 여부	영리/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세제 지원	① 법인세: 4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¹⁾ : · 부동산취득세 50% 경감 · 등록면허세 50% 경감 · 재산세 25% 경감 ③ 비영리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① 법인세: 수익사업에 대해 납세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②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③ 지방세: 기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적용, 그 외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규정 없음	① 법인세: 수익사업에 대해 납세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②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③ 지방세: 비영리 사업별로 감면 규정 두고 있음
재정 지원	① 사업주부담 4대보험 지원 ②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²⁾ 의 100~50% ³⁾ ③ 전문인력비 지원: 기업당 3인 한도 최대 3년간 ⁴⁾ ④ 사업개발비: 연간 1억원 ⁵⁾	없음	없음

주: 1) 중소기업에 한함
 2) 최저임금 100% 금액은 월 1,107천원임
 3)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4)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당 1인 최대 2년간(1인당 월 200만원한도)
 기업이 일정부분은 부담하여야 함.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 사회적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임
 5)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한도

4) 협동조합기본법과 비영리법인에 관한 특별법의 관계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법인격 취득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법의 운영주체인 중앙정부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허가를 얻어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를 얻은 후에는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차별 없이 법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업종 및 분야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조건인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을 40% 이상 수행하면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하는 업종에도 진출이 가능함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슈퍼마켓, 세차장, 기타 협동조합에서 제한하지 않는 모든 업종에 진출이 가능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든 업종에 진출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들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되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가능함
-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기존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잠식할 수 있음

5)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과 기존 의료기관의 관계

- 의료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강화되어 500인 이상의 조합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출자금에 대한 제한도 최대 10%로 하고 있는 등 규제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강함
- 의료기관에 대한 설립이 타 사회적협동조합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의료기관은 기존의 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시설과의 경제적 이익의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은 협동조합 주변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던 환자들을 조합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주변의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윤을 감소시킴
 -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의 의료기관은 기존의 의료기관이 누리던 경제적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비금전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역

합을 함

- 이에 따라 의사협회 등 기존의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협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범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

〈표 Ⅲ-13〉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차이(행적적)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인병원 위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차이	의료법에 따라서 수행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음
직원의 채용	의료법에서 정하는 모든 의료인 기타 인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채용에서 차이가 없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음
진료할 수 있는 대상의 제한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50% 이상 필수 진료 (사회적기업 인증 전에는 조합원만 진료 가능) -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는 제한적으로 가능(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진료 가능) 	조합원 50% 이상 필수 진료 (비조합원은 총진료인원 중 50% 이하로만 진료 가능)
설립 구성원에 적용되는 제한	제한 없음	필요한 인원은 500명 이상이며 조합원은 설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지역제한 있음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함
설립하는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 모두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격을 갖춰야 함	특별한 자격 사항이 없음	특별한 자격 사항이 없음

-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 한명의 조합원이 최대 100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지만 이 비율도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사무장 병원 출현 우려가 계속해서 존재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출자가 가능 비율을 더 낮은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기관 개설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형태의 의료기관은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용역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의 출범은 기존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 가능하게 함

-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은 조합원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시 조합원이 주인인 병원을 이용함에 따른 애착심 및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좀더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협동조합의 형태의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이용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신상 파악 등을 통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의료기관과 조합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의료기관이 조합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증진하는 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Ⅲ-14〉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의 차이(재무적)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인병원 위주)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입금 한도액	제한 없음	자본금의 100%까지만 차입가능	총회 의결로 차입금 한도 변경가능
정부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해당 없음	사회적 기업인증 획득시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음	사회적 기업인증 획득시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음
기부금 수증 가능 여부	개인병원은 비지정기 부금이 되어 자산 수 증이익으로 과세됨 (의료법인은 기부금 대상임)	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기증자에게 증 빙 처리 가능	비지정기부금이 되어 자 산 수증이익으로 과세됨
의료보험상 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책정의 자유	진료가액 변경 불가	진료가액 변경 불가	진료가액 변경 불가
비급여항목에 대 한 가격 책정의 자유도	경영진의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변경 가 능	조합원들에 대해서 할인 을 해 주고 있으며 비조 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율 적으로 가격 책정	조합원들에 대해서 할인 을 해 주고 있으며 비조 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율 적으로 가격 책정
설립에 필요한 금전적인 제한	없음	조합원 1인당 50,000원 이상의 납입이 필요하며 최소 자본금이 1억원 이 상이어야 함	조합원 1인당 10,000원 이상의 납입이 필요하며 최소 자본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출자 한도	없음	총출자액의 10분의 1	총출자액의 5분의 1
세제 혜택	비영리법인 형태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나 법인 형 태가 아닌 개인 병원 은 세제 혜택이 없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 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 리법인에게 적용되는 모 든 세제혜택을 받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세제혜택 및 의료법 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을 받음

IV. 외국의 협동조합 과세제도

1. 일본

가. 협동조합의 범위 및 특징⁶³⁾

1) 조합의 종류

- 조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음
 - 조합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설립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성원의 업종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조합에 대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합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과세상 차이가 있음
 - 법인세법상 차이에 따라 ① 사업협동조합 등, ② 비출자조합, ③ 기업조합 및 협업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 및 기타 각종 혜택이 주어짐
 -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출자상공조합, 출자상공조합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출자생활위생동업조합, 생활위생동업소조합 및 출자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임
 - 모두 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경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합임

63) 中小企業組合ガイドブック(2013)

-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보조의 정신에 따라 공동 사업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와 경제적 지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이므로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이 가능함
 - 4명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함
 - 사업협동조합이 많이 하는 사업은 공동생산·가공사업, 공동구매사업, 공동판매사업, 공동수주사업, 공동검사사업, 시장개척 및 판매촉진사업, 연구개발사업, 정보제공사업, 인재양성사업, 금융사업, 채무보증사업, 공동노무관리사업, 복리후생사업, 공제사업 등임

- 비출자조합은 비출자 제도를 취하는 조합으로 경제사업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이 업계 전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로 하는 등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으로 다루어지며 법인세 등 지방세의 대부분이 비과세임
 - 이에 속하는 조합은 상공조합, 상공조합연합회, 생활위생동업조합 및 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임

- 비출자조합에 해당하는 상공조합은 사업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업계 전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동업자조합이므로 업계를 대표하는 동업조합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임
 - 원칙적으로 1 이상의 도도부현을 지역으로 하여 그 지역 내의 동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을 두고 있음
 -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이지만 일정 조건하에서 대기업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상공조합은 출자제조합과 비출자제조합이 모두 가능한데, 출자제조합의 경우에는 사업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의 경제사업이 가능함

- 기업조합 및 협업조합은 조직이나 사업 형태 등에서 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보통법인”으로 취급하며 대체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함

- 기업조합은 개인사업자나 근로자 등이 4명 이상 모여 개개인의 자본과 노동을 조합에

집중해서 조합 자체가 하나의 기업체가 되어 사업 활동을 하는 조합임

-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부, 학생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의 범위도 제한이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자가 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적합함
- 기업조합은 조합원이 함께 일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부과됨
 -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 사업에 종사하여야 함
- 과거에는 조합원을 개인으로 제한하였으나 조합원을 지원하는 법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음

□ 협업조합은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가 이전부터 경영하던 사업을 통합해 사업 규모의 적정화와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생산 및 판매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임

- 조합원은 사업자이어야 하고 4명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관에 정하면 조합원 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대기업자도 가입시킬 수 있음
-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하거나 신규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1인이 출자지분의 50% 미만까지 가질 수 있음

□ 2012년 3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전체 조합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조합 및 협업조합의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음

〈표 IV-1〉 일본의 연도별 협동조합 수

(단위: 개)

		2001	2003	2005	2007	2012. 3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사업협동조합	39,448	38,942	38,520	37,755	30,566
	사업협동소조합	16	15	13	13	5
	화재공제협동조합	14	44	44	44	42
	신용협동조합	280	191	175	168	158
	협동조합연합회	812	803	790	778	684
	기업조합	2,006	2,109	2,368	2,512	1,908
중소기업 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협업조합	1,319	1,247	1,209	1,154	866
	상공조합	1,568	1,511	1,475	1,407	1,240
	상공조합연합회	61	60	56	54	52
상점가 진흥조합법	상점가진흥조합	2,631	2,628	2,617	2,601	2,557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119	118	119	119	115
생활위생동업조합		587	586	582	580	573
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		16	16	16	16	16
생활위생동업소조합		4	3	3	3	3
계		48,911	48,272	47,987	47,207	38,785

자료: 김수환(2009), p. 132; 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 『中小企業組合ガイドブック』(2013), p. 19

2) 조합의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형태 중 비출자조합을 제외한 사업협동조합, 기업조합, 협업조합의 특성을 비교함
 -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특성이 조합원의 출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출자조합은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외함
- 사업협동조합과 기업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협업조합은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설립근거법은 차이가 있으나 행정처의 인가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함
-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이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4인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야 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도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음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조합은 4인 이상의 개인이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들에 의해 설립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사업협동조합과 기업조합은 4인이 모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의 출자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고 의결권도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협업조합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의 사업자가 설립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출자한도가 50%이므로 1인이 5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에 있어서도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출자비율에 따른 의결권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운영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표 IV-2〉 일본의 조합제도의 개요

	사업협동조합	기업조합	협업조합
근거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목적	① 조합원에게 직접 봉사 ② 조합원의 경영합리화 ③ 경제활동 기회의 확보	① 조합원에게 직접 봉사 ② 조합원의 경영합리화	① 사업규모의 적정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② 공동이익의 증진
설립	행정처의 인가	행정처의 인가	행정처의 인가
설립요건	4인 이상의 사업자	4인 이상의 개인	4인 이상의 사업자
조합원 자격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자	개인 및 법인	중소기업자 및 1/3 이내의 중소기업 이외의 자 ¹⁾
조합원비율요건	없음	전 종업원의 1/3 이상이 조합원	없음
종업원비율요건	없음	전 조합원의 1/2 이상이 종업원	없음
출자한도	25%	25%	50%
의결권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출자비율에 따른 의결권도 인정)
외부이용제한	원칙적으로 조합원 이용분량의 20%까지 허용	없음	없음
배당	이용고배당 및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및 출자배당	없음

주: 1) 중소기업 이외의 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

자료: 中小企業庁, 「中小企業施策総覧」, 2010.

나. 협동조합세제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 달리 세제상 우대하고 있음
 - 「법인세법」에서 협동조합 등⁶⁴⁾으로 분류하고 있는 조합은 모두 출연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조합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해서도 많은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법인세법」상 지원제도로는 세율의 경감, 이용고배당⁶⁵⁾의 손금산입, 유보소득 특별공제제도, 가입금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음

- 「법인세법」의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정책 목적 실현의 관점에서 「법인세법」과는 다른 조합의 범위를 설정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지방세법」도 각 세목 중의 특별조치마다 대상이 되는 조합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에만 적용되는 세제와 함께 일반세제 및 조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별조치가 함께 적용됨

1) 법인세

가) 경감세율 적용

-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등⁶⁶⁾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등은 모두 출연제를 채택하고, 경제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조합이며, 조합원의 사업을 조합의 공동사업에 의해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조합임
 -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은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화재공제협동 조합,

64) 법인세법 제2조 제7호

65) 일본의 경우 事業分量配當, 利用分量配當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66) 법인세법 제2조 제7호

신용협동조합, 출자상공조합, 상가진흥조합, 출자생활위생동업조합, 생활위생동업
소조합 및 이들의 연합회 등이 있음

-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이 25.5%인 데 반해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9%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특정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10억엔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함⁶⁷⁾
- － 특정 협동조합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협동조합임
- ①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중 물품공급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기타 이용자
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수입금액이 50%를 초과
 - 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합원의 수가 50만명 이상
 - ③ 해당 사업연도의 물품공급사업 중 점포에서 이루어진 수입금액이 1,000억엔
이상

〈표 IV-3〉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세율 ¹⁾
보통법인, 인격 없는 사단	중소법인 ²⁾ 또는 인격 없는 사단	연 800만엔 이하 부분	15
		연 800만엔 초과 부분	25.5
	중소법인 이외의 법인		25.5
공익법인 등	연 800만엔 이하 부분		15
	연 800만엔 초과 부분		19
조합법인 등	연 800만엔 이하 부분		15
	연 800만엔 초과 부분		19
	특정협동조합 등 ³⁾ 의 연 10억엔 초과 부분		22
특정의료법인	연 800만엔 이하 부분		15
	연 800만엔 초과 부분		19

주: 1) 2012.4.1부터 2015.3.31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세율

2) 보통법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이거나 자본금 또는 출
자금이 없는 경우임

3) 당해 사업연도에 물품공급사업 중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1,000억엔
이상, 조합원 수가 50만명 이상, 물품공급사업 관련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협동조합을
말함(措法68, 68의108, 措令39의34, 39의127)

67)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

나)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

-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분량에 따라 실시하는 이용고배당은 손금에 산입함
 -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잉여금 처분이지만 조합의 잉여금이 주로 조합원의 조합 사업의 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합원에 대한 일종의 할인혜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임

- 이용고배당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지출 사실을 결의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이용분량 또는 해당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임⁶⁸⁾
 - 즉, 조합원 구성원에게 해당 조합원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급한 물건의 수량, 가격 그 외 그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한 분량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또는 조합원 구성원에게 해당 조합원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임

- 이용고배당을 지급하려면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 결산시 잉여금 처분을 확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이용해서 생긴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각이익이나 조합원의 이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서 생긴 잉여금은 대상이 아님
 -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과 그렇지 않은 잉여금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분배 기준이 될 조합원의 사업 이용량은 당기 이전의 것은 포함되지 않음
 - 조합은 이용 분량의 지불에 있어서 원천소득세를 징수할 필요는 없고, 손금 산입받은 부분은 지급받은 법인 조합원 측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개인사업자인 조합원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 금액) 수취배당금 익금산입의 대상은 아님

68) 법인세법 제60조의2

다) 유보소득 특별공제⁶⁹⁾

- 자기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상 이익적립금 명목으로 출자의 4분의 1까지 당해 연도에서 유보한 금액의 32%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출자금이 1억엔을 넘는 조합의 경우에는 누적유보율의 구분에 기초하여 공제율이 인하됨
 - － 공제율은 누적유보액이 2,500만엔 이하인 경우 32%, 2,5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인 경우 20%, 1억엔 초과 2억엔 이하인 경우 14%, 2억엔 초과인 경우 10%임
- 유보소득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은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출자상공조합·동연합회, 출자생활위생동업조합·동연합회로 원외 이용을 20%로 제한하는 협동조합임
 - 화재공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기업조합, 협업조합, 상가진흥조합 등은 제외됨
 - 특별공제를 적용한 유보금액을 3년 이내에 배당, 익금 처분의 상여로 처리한 경우에는 오래된 연도의 유보금부터 익금에 산입함

라) 기타 지원세제

- 기업조합, 협업조합을 비롯한 출자가 있는 모든 조합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가입금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경우, 조합법 등 조합의 근거법에 따라 설립, 주소 변경, 임원 변경의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됨
 - 부동산 등기 등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는 등기, 등록, 특허, 기타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됨
- 인지세의 경우, 정관이나 출자 증권의 발행, 조합이 조합원에 발행하는 것 및 조합원이 조합에 발행되는 수취서 등과 관련한 인지세는 비과세임

69) 조세특별조치법 제61조

- 영업에 관한 것은 비과세 아님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에 대해서는 수표나 예·저금 통장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 소득할사업세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할 및 자본할 사업세는 부과되지 않음

- 고정자산세의 경우 사무소 및 창고(부지 제외)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함⁷⁰⁾
 - 신용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사무소 및 창고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폐지되고 과세표준이 가격의 50%임

2. 캐나다

가. 협동조합의 범위 및 특징

- 캐나다의 경우 각 지역에서 정하는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음
 - 특히 퀘벡지역이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음
 - 퀘벡에는 2010년 말 현재 약 3,300개의 협동조합과 상호조합이 있고 조합원 수는 약 880만명으로 퀘벡 인구 780만명보다 더 많음⁷¹⁾
 - 현재 퀘벡 인구의 약 70%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속해 있음
 - 퀘벡의 협동조합은 약 9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매출액 규모 220억 캐나다 달러, 자산규모 1,200억 캐나다달러에 이룸

70) 지방세법 제348조 4항

71) 설광연·김동석(2012), p. 69

- 퀘벡협동조합법(Quebecois Cooperative Act)은 ① 이용자(소비자)협동조합, ② 생산자조합, ③ 노동자협동조합, ④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 ⑤ 노동자-주주협동조합(worker shareholder cooperative)의 다섯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 이 중 소비자협동조합이 56%, 연대협동조합이 20%, 생산자협동조합이 12%를 차지하고 있음

- 연대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최근 퀘벡주 협동조합 활성화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란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자원활동가 또는 지역사회 후원자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한 조직 내에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이들의 지배를 허용하는 협동조합임⁷²⁾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한 계층의 조합원으로 조직되는 반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이질적인 조합원을 기반으로 조직됨

- 퀘벡에서의 협동조합은 입법적인 변화와 더불어 최근 크게 발전하였음⁷³⁾
 - 전통적인 협동조합모델에서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과 근로자-주주협동조합(worker-shareholder cooperative)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변형된 형태가 탄생되었음
 - 2005년 법 개정으로 이용자, 노동자, 후원자 세 그룹 중 둘 또는 세 그룹으로 구성된 연대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본과 지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모델로, 퀘벡에서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형태임

- 연대협동조합의 경우, 이사는 각 그룹의 조합원 내에서 선출하되, 내규에 따라 배분된 숫자대로 선출하고 후원조합원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72)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2012, p. 3

73) Monica Juarez Adeler(2009), p. 15

- 잉여는 이용자 조합원에게 판매 혹은 구매에 따라 노동자 조합원에게는 임금이나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됨
 - 후원조합원은 잉여배분은 받지 않고 배당을 지불하는 우선주를 구매할 수 있음
 - 잉여의 배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은 연대협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이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퀘벡 협동조합 수는 3,300개로 이 중 비금융협동조합 2,800개 금융협동조합 500개로 구성되어 있음

〈표 IV-4〉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현황(2013년 현재)

(단위: 개, 명)

	계	비금융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협동조합 수	3,300	2,800	500
조합원 수	8,800,000	1,200,000	7,600,000
일자리 수	92,000	44,200	47,800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 조사보고서』, 2013, p. 50

- 근로자-주주 협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지분을 구입하고 지분에 따라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태임
- 회사에 대한 협동조합의 의결권은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인의 회원은 하나의 의결권을 가짐
 - 근로자-주주 협동조합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음

나. 협동조합세제

- ITA(Income Tax Act)에서는 협동조합법인(cooperative corporation)이란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천연제품(natural products)의 판매, 회원들을 위한 물품의 구입 또는 회원들을 위한 용역의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적격한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⁴⁾

- 협동조합법인은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설립에 관한 정관 등(statute, charter or articles, contracts)에서 이용고배당(patronage dividends)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함
 - 구성원은 하나의 의결권을 가져야 함(1인 1표)
 - 협동조합 구성원의 90% 이상이 개인, 다른 협동조합법인, 또는 법인이거나 농업을 운영하는 파트너십이어야 하고 지분의 90% 이상을 그들이 소유하여야 함

- 캐나다는 협동조합 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2단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용고배당금의 손금산입 등을 통하여 1단계 과세제도를 실현하고 있음
 - 만일 협동조합법인이 단순히 회원(members/customers)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면,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대리인법상 회원에 귀속됨

- 협동조합법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격한 사업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소득 계산에 있어서 협동조합법인은 회원(members /customers)에게 지급한 이용고배당금을 공제할 수 있음⁷⁵⁾
 - ITA Sec. 135에서는 회원(customers)에게 지급한 이용고배당금(Patronage dividends)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용고배당금은 회원(customer)에게 안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납세자인 회원의 사업금액을 기초로 배분함
 - 이용고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 이용고배당금은 해당 배당을 수취한 과세연도에 회원의 소득에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74) Canadian Master Tax Guide(2013), pp. 935~936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규정은 ITA Sec. 136의 규정에 따름

75) 우대세율은 단일세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상이함

캐나다 거주자에게 이용고배당금을 지불하는 자는 이용고배당금의 15%를 원천징수 (source deduction)함

- 원천징수된 금액은 회원(customer)의 예납세액(tax liability)으로 처리되고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공제됨

□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인이 지급하는 과세가 이연된 이용고배당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법인이란 기본적인 사업이 농업이거나 회원의 75% 이상이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법인을 의미함
- 농업협동조합법인은 이용고배당을 지급할 때 요구되는 15%의 원천징수(source deduction) 없이 과세이연된 협동조합증권(tax-deferred cooperative shares)을 발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인은 현금으로 이용고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많은 농업협동조합이 상환가능한 주식(redeemable shares) 형태로 이용고배당금을 분배함
- 과세이연된 협동조합증권으로 지급한 이용고배당에 대한 공제가능금액은 회원의 사업에 귀속되는 소득의 85%로 제한됨

□ 협동조합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투자제도(Cooperative Investment Plan, Régime d'investissement Coopératif)와 소득세 과세유예제도(Deferred Tax Rebate)를 선택적으로 적용함

- 협동조합투자제도는 1985년에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조합원과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25%까지 개인소득세 산출시 소득공제를 허용함⁷⁶⁾
- 소득세 과세유예제도는 배당금을 협동조합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임
 - 현금으로 배당받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됨

76) 퀘벡 주정부의 정책은 Monica Juarez Adler(2009)의 pp. 15~16을 기초로 정리함

3. 프랑스⁷⁷⁾

가. 협동조합의 범위와 특징

- 프랑스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두 존재함
 -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일반법(1947년 9월10일법 제47-1775호로 제정된 ‘협동조합의 정관을 위한 법(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으로서의 협동조합공통법과 협동조합 종류별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존재함
 - 협동조합공통법과 특별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

- 기본법에서 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⁷⁸⁾
 - 조합원의 공동노력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를 인하하거나 기업자나 중간업자의 보수부분을 환수함
 -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조합원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함
 - 조합원의 일반적인 필요의 충족과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촉진함

- 협동조합의 형태는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은행협동조합(Bank cooperation)과 소비자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on)은 일반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법인(commercial corporation)과 같은 형태를 지님
 - SCOP(worker cooperation)와 같은 중소기업(SMEs enterprises) 협동조합은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각 개별법에서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원,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⁷⁹⁾

77) Cooperative Europ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1435/2003 on the Statute for European Cooperative Society(SCE), pp. 519~544를 기초로 정리함

78) 협동조합공통법 제1조

79) -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on): Book V, title II of the Rural Code

- 프랑스에서는 2001년 공익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작되었음⁸⁰⁾
 - 공익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는 ①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②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③ 다른 기업들과 협동조합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④ 사회적 경제의 다른 형태로서 협력을 유지하며 지속성을 지니기 위한 것이었음

- 공익협동조합은 상법상 기업으로 등록되면서 공익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의 원칙인 1인 1표제를 적용함
 - 조합원은 1명 이상의 노동자와 1명 이상의 수혜자 및 제3자로 구성됨
 -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에 공익협동조합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분은 20% 이하로 제한됨
 - 활동 분야는 환경, 농업, 먹거리,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함
 - 공익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사회적 공헌은 지역개발, 참여, 고용, 사회적 관계의 형성 등에 있음
 -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받지 않음

- 협동조합은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Trade and Companies Register에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립시 승인(authorization)이 요구되는 협동조합도 있음
 - 농업협동조합, SCOPs(work cooperation), SCISs(cooperative societies of collective interest) 등은 설립을 위한 승인절차가 필요함

- 소매상협동조합(Cooperatives of retail tradesmen): articles L 124-1 to L 124-16 of the Code of Commerce (Book I - Title II - chapter 4)
 - 숙련공협동조합(Cooperatives of artisans), 수산업협동조합(maritime cooperatives), 운송업협동조합(cooperatives of transporters): Law No. 83-657 of 20 July 1983
 - 근로자협동조합(Worker production cooperatives): Law No. 78 -763 of 19 July 1978
 - 건설업협동조합법인(Construction cooperative corporations): articles L 213-1 to 213-15 of the Construction and Habitation Code
 - 공공주택조합(HLM(public housing)): articles L 422-12 to L 422-15 of the Construction and Habitation Code
 - SCIC(cooperative societies of collective interest): the law of 1947, title II ter

80) 최혁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 전략」, 사회적경제센터, 2012

-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개인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조합원이 보유하는 최저 주식 수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합원의 수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인 경우에 최소 2명, 농업협동조합은 최소 7명임
 - 새로운 조합원의 영입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영입할 수 있음
 - 노동자조합이나 소비자조합 같은 경우 자유롭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협동조합공통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합원 외 이용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⁸¹⁾
 - 소비자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과 신용협동조합(credit cooperative)은 개방형 협동조합(open cooperatives)으로서 비조합원에게도 어떠한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
 - 중소기업 협동조합(Cooperatives of SMEs)은 폐쇄형 협동조합(closed cooperatives)으로서 개별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연인 또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 소매상 협동조합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 외의 협동조합(agricultural, maritime, craft, carrier)은 매출의 2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농업협동조합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SCOPS(work cooperatives)의 경우 근로자가 모두 조합원이 될 필요는 없고 다만 1년 동안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경우 조합원이 됨
- 일반회사와 달리 출자지분에 대한 분배(remuneration)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배를 하는 경우, 이는 배당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봄

81) 협동조합공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지급률은 재무부에서 공시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적용함
- 협동조합의 이익은 이용고배당금 형태로 분배됨
 - 이용고배당금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임
 - 회사 형태의 협동조합이 이용고배당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그들의 사업이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용고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임
 - 그러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개방형 협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이용고배당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모든 협동조합은 매년 이익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 누계액이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각 특별법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각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함⁸²⁾
 - 다만, 연합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 또는 중요도에 따라 의결권의 차등할 수 있음

나. 협동조합세제

-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됨
 - 개인회사 형태이면 개인소득세, 법인 형태이면 법인세가 과세됨
 - 소비자협동조합과 근로자협동조합(worker cooperation)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조합의 지분을 대부분 조합원(투자조합원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소매상협동조합과 상호은행협동조합에서도 이용고배당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82) 협동조합공통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운송(carrier)협동조합 등은 법인세를 면제함
 - 과세면제는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
 - 비조합원 간의 거래는 매출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조합원 간의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 투자조합원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법인세 과세면제가 취소됨

- 사회적 주택협동조합(social housing cooperatives)은 사회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으로서 과세가 면제됨

4. 이탈리아

가. 협동조합의 범위와 특징⁸³⁾

- 이탈리아의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가지의 협동조합에 대한 법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1947년 헌법 제 45조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인정하고 공공기관들과 민간조직들 간의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의 자유를 승인함
 -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농협,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맞는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만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에 따름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립적이지 않고, 비정치적이지 않으며, 종교에 중립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변화가 생겼음
 -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레가협동조합에서는 오랫동안 구이탈리아 공산당과 사회당에

8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2012.7, pp. 31~35

서 추천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관계가 있었으며 이사회 구성 역시 대부분은 공산당원과 사회당원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운영체제는 1990년대부터 변화가 있었으며 1996년에 레가협동조합 회장으로 선출된 바르베르니는 레가협동조합 최초로 정당의 추천을 받지않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함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을 위한 금융 및 경영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FINEC(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는 1987년에 설립된 투자은행으로 형태는 주식회사며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하려는 목적하에 레가와 이탈리아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가 공동설립하였음
- FINEC의 기능은 협동조합의 벤처캐피털 제공, 장기투자 제공, 금융서비스 제공임(시장분석 및 리스크분석, 상담기능 포함)
- 또한 각 계통의 협동조합조직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아(Consortia)를 구성함
 - 컨소시아는 훈련서비스, 기술서비스, 관리서비스, 지식 및 정보제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회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며, 더 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을 준비하는 기능도 있음
 - 또한 Confcooperative의 지원을 받는 CGM(Consorzio Gino Mattarelli)나 Legacoop의 지원을 받는 Farsi Prossimo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컨소시아는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협동조합계통조직인 Confcooperative와 Legacoop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하의 수많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출연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Confcooperative에 의하여 조성된 Fondosviluppo와 Legacoop에 의하여 조성된 Coopfond는 일종의 협동조합 상호지원기금이라고 할 수음

- 이 기금의 모든 회원들은 연간 당기순이익금의 3%를 이 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며 활용범위는 일정 정도의 법적 제한이 있음
 - 법적 제한의 이유는 협동조합의 혁신과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탈리아는 1992년 투자조합원에 대한 법률을 신설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초기 생존 및 대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 모집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함⁸⁴⁾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출자 1구좌당 가치는 25유로 이상 500유로 이하이어야 하며 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 1인당 총출자금액은 10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음⁸⁵⁾

나. 협동조합세제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모든 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하여 일정 부분은 비과세로 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부여받음
 - 이탈리아의 세법은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 등 전체 협동조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여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을 통하여 일반적인 세제혜택에 더해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함

84) 국회의원 김기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2013.3.10

85) 기획재정부, 「상생과 통합의 미래-협동조합과 함께」, 2012

1) 판돌피 법(Pandolfi law)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⁸⁶⁾

- 1977년 판돌피 법(Pandolfi law)은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유보금, 즉 비분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여 법이 제정된 후 협동조합도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판돌피 법에 따라 비분할 적립금제도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잉여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으며 세율은 일반법인세율과 동일한 27.5%를 적용함
 - 즉, 잉여금이 100유로일 때 일반 기업은 100유로 전부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만 비분할 적립금 비율이 70%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유로의 30%인 30유로에 대해서만 과세를 함
 - 잉여금 중 과세비율은 기본적인 협동조합은 30%이고 소비자협동조합은 55%를 과세하며 농업협동조합은 20%만 과세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과세비율을 운영하고 있음

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

-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는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적립한 잉여금 전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특징임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은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구체화되었으며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매출 부가가치세율을 4%로 적용받는 것도 있음
 - 또한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보장부담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부여받음

86) 『Comparison between Spanish and Italian Regulations on Cooperative Firms: Traditional or Hybrid Model?,』 2009.2, Idana SALAZAR TERREROS, Giulio MALORGIO, Carmen GALVE GÓRRIZ

-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381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⁸⁷⁾
-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혜택 또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만 이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외부 비조합원도 사업과 수익의 대상이 되는 개방성과 사회성을 가짐
 - 조합원은 노동자·이용자·자원봉사자·재정후원자·법인(지방정부를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전체 조합원 수의 50%를 넘지 못함
 - 다원적인 조합원 구조를 갖되 노동자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 조합원의 비율을 제한함
 - 조합원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은 전체 이익금의 80%를 넘어서는 안 되고 1구좌당 배당률은 이탈리아 우체국 발행 채권수익률인 2%를 넘을 수 없으며 청산 시 자산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
 - 조합원들의 배타적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사회적 성격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임
 - 사회적협동조합은 활동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A유형 협동조합과 사회적 불이익자들을 고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B유형 협동조합으로 구분하며, B유형에는 사회적 불이익자들이 전체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정부 및 공공부문은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자선조직과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할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까지 감면함
 - 또한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20%까지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조합들은 사회보장부담세를 면제받음

87) <http://socialeconomyaz.org/wp-content/uploads/2011/06/SocialCooperativesInItaly.pdf>,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2012.7, pp. 31~35

5. 스페인

가. 협동조합의 범위와 특징⁸⁸⁾

- 스페인은 헌법 제129조 제2a항과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인 ‘스페인 국가협동조합법 (Ley de Cooperativas)’에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를 관장하고 있음⁸⁹⁾
 - ‘스페인 국가협동조합법(Ley de Cooperativas)’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11년에 개정을 거쳤음
 -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협동조합법 이전에는 스페인은 헌법과 각 지방의 개별적인 협동조합법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것을 규율하였음
- 헌법과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법 이외에 5개 자치지역(Andalucía, Cataluña, Valencia, País Vasco, Navarra)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 경영이사회, 감독위원회 등 4개의 조직이 있음
 -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관 개정과 조합원 징계, 합병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협동조합은 최소한 5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함
 - 이사회는 관리 면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원은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대외적으로 협동조합을 대표함
- 협동조합법 제6조는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환경개발협동조합, 서비스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운수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 건강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음

88)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p. 53

89) 스페인 헌법 및 국가협동조합법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제105조~제1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영리를 기본으로 하며 건강, 사회복지, 교육, 문화 또는 기타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⁹⁰⁾
- 협동조합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사업유형에 따라 보유주식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협동조합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최고 40%의 지분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최고 1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시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사업영역이 지방인지 또는 전국적인지를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자 조합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나 Andalucía, Cataluña, Valencia, Pais Vasco 지역에서는 투자협력자(investment partners) 등 비조합원도 조합에 참여할 수 있음
 - 비조합원인 참여자는 ‘지원조합원(supporting members)’ 또는 ‘협력조합원(collaborating members)’ 등으로 지칭하며 또한 국가법(State Law)은 일반법인 및 자연인들도 협동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준조합원제도는 조합원 탈퇴로 인한 자본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준조합원은 출자자본에 대한 이자를 수령함
 - Cataluña, Pais Vasco 지역에서는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 고정이율 또는 제한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원칙을 법에서 수정하였는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분 보유자에 대해서는 수익에 따른 변동이율로 배당을 받음
-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1인 1표주의와 조합원 개방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준조합원과 투자협력자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국가 협동조합법과 다섯 개의 자치주의 법은 조합원 개방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이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최소 자격 유지기간을 정해 놓고

90) 스페인 국가협동조합법(Ley de Cooperativas) 제106조

있음

- 최소 5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Andalucía, Navarra 지역에서는 이 기간을 최고 10년까지 규정)으로 조합운영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반이 됨

□ 스페인 협동조합의 적립금은 의무적립금, 교육진흥적립금, 임의적립금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무적립금과 교육적립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이며 배당이 불가능함

- 의무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잉여금 중 일부를 조합 내부에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 비율은 정관에서 정하나, 법에 의해 최소한 20%를 적립함
 - 의무적립금은 배당이 불가능한 적립금으로서 세제혜택의 대상이 됨
- 교육진흥적립금은 협동조합 발전과 조합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의무적인 사회 적립금으로 배배주의적 성격을 지닌 적립금임
- 임의적립금은 앞의 기금들과는 달리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이 기금은 매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할 수도 있고 완전히 임의적으로 적립할 수도 있음
 - 임의적립금은 새로운 투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달될 때도 사용되며, 지불 이자율은 법에 따라 스페인 국립은행의 기본 이자율을 기준으로 최고 이율로 설정됨
 - 이 적립금은 투자조합원, 준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됨

□ 협동조합의 자본증대 방안에는 내부은행제도(sección de crédito)가 있는데, 이 방법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에서 사용되며 조합원과 협동조합을 상대로만 사업이 가능함

□ 자치단체의 법 수준에서는 Cataluña, Pais Vasco 주법에서 협동조합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은 투자금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나. 협동조합세제⁹¹⁾

- 스페인의 협동조합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신용협동조합은 25%)를 적용하지만 비협동조합 활동에⁹²⁾ 의해 생긴 이익은 일반기업과 같은 세율인 30%을 적용함
 - 스페인 법인세법 중 ‘Special tax scheme for cooperative groups’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인세법에서 지칭하는 ‘보호받는 협동조합(Protected cooperatives)’은 국가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법을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을 의미함
 - 구분경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거래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협동조합에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임

- 협동조합이 최고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인 20%가 적용되지만 자회사의 수익이 협동조합과 관련이 없거나 비조합원과의 거래 또는 투자이익과 관련된 경우는 표준세율인 30%가 적용됨⁹³⁾

- 기타 협동조합연맹이나 연합(Co-operative unions and federations)에 대한 법인세율은 25%임
 - 협동조합 연맹이나 연합은 개별 협동조합들의 상위 단체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다름

- 과세표준은 협동조합의 활동 및 협동조합 외의 활동 결과로 이루어지고 잉여금 중 의무적립금의 50%는 손금산입이 됨
 - 스페인의 의무적립금 법정 최소 적립비율은 총발생 잉여금의 20%임

91) 스페인 법인세법 중 협동조합 관련 특별세제편

92) 협동조합원 이외의 주체와의 거래

93) <http://www.minhap.gob.es/en-GB/servicios/procedimientos%20administrativos/Paginas/ProcedimientosAdministrativos.aspx?idProcAdmin=242&opc=1>

- 협동조합은 3년 이내의 내용연수를 가진 신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단, 감가상각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대 상각범위는 협동조합의 당해 연도 이익을 초과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비협동조합에서의 손실도 향후 15년의 과세연도 내에서 협동조합 활동의 이익에서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협동조합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세제혜택 이외에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협동조합은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됨
 - 모든 특별보호대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받는 세제혜택 이외에 납부 세금의 50%를 환급받음으로써 실질 세율은 10%를 적용받게 됨
 - 특수하게 보호받는 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지역토지개발 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음
 - 협동조합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협동조합연합은 설립후 5년간은 납부한 세금의 90%를 환급받음
 - 농업개발협동조합협회(priority agricultural associative exploitation)는 기간의 제한 없이 총납부액의 80%를 환급받음

- 스페인은 이윤고배당의 재원이 되었던 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손금산입을 하고 있음

V. 협동조합제도의 국제비교

1.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근거법률의 형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법으로서의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제정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일반법만으로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 국가와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법만 제정하는 국가가 있음
 -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일반법과 특별법을 각각 제정하고 있음
 - 일본은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각각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헌법으로 협동조합을 보장하고 협동조합 일반법도 같이 제정하고 있음
 - 스페인도 헌법으로 협동조합을 보장하고 협동조합 일반법도 같이 제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협동조합을 개별적으로 정해 놓은 곳도 있음

-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투자조합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규모 자원 마련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표 V-1〉 주요국의 협동조합제도 특징

	한국	일본 ¹⁾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근거법	일반법 특별법	특별법	일반법	일반법 특별법	헌법, 일반법	헌법, 일반법
협동조합 유형	① 일반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① 사업협동조합 ② 비출자협동조합 ③ 기업조합· 협업조합	① 일반협동조합 ② 연대협동조합 ²⁾	① 일반협동조합 ② 공익협동조합	① 일반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① 일반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투자조합원의 여부	불가능	가능 ³⁾	가능 ⁴⁾	가능	가능	가능
출자배당 여부	○	○	○	○ ⁵⁾	○	○
이용고배당 여부	○	○	○	○	○	○

주: 1) 사업협동조합을 기준으로 정리함
 2)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주식형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의 5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중 연대협동조합을 우리나라의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으로 구분함
 3) 기업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지원하는 법인도 가입 가능
 4) 연대협동조합의 경우 후원조합원은 이사회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함
 5) 이자 성격이며, 회사채이자율 적용함

2. 과세제도

가. 세율

주요국 중 일본, 스페인, 캐나다는 세율을 감면해주고 있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적립금에 대하여 일정 부분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표 V-2〉 주요국의 협동조합 적용세율

	일반법인세율	협동조합 적용세율
한국	22%	22%
일본	15%/25.5%	15%/19%/22% ¹⁾
캐나다	39.5%/26.5% ²⁾	주에서 정하는 우대세율
프랑스	33.3%	- 원칙: 일반세율 - 법인세면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운송협동조합의 조합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이탈리아	27.5%	27.5% ³⁾
스페인	30%	20% ⁴⁾ /신용협동조합은 25%

주: 1) 800만엔 이하 부분/800만엔 초과부분/당해 사업연도에 물품공급사업 중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1,000억엔 이상, 조합원 수가 50만명 이상, 물품공급사업 관련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협동조합의 연 10억엔 초과부분

2) 퀘벡주의 법인세율임

3) 이탈리아는 비분할 적립금을 통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적용하므로 세율 혜택은 없음

4) 비협동조합활동에서 생긴 이익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함

나. 배당금 및 비분할 적립금

- 조사대상국 모두 이용고배당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음
 - 내부유보되어 향후 손실 대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조합원 사이에 분배될 수 없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Unallocated Collective capital)으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등의 비분할 적립금으로 승계됨⁹⁴⁾
- 조사대상국 중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재정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9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보도자료」, 2013.12.29

〈표 V-3〉 주요국의 협동조합 과세제도

	이용고배당금의 세무처리	출자배당금에 대한 제한	비분할적립금 비과세
한국	손금불산입 ¹⁾	출자금의 10%	비분할적립금제도가 없음
일본	손금산입	사업협동조합: 10% 기업조합: 20%	비분할적립금 일부 비과세 유보된 금액의 32% 과세소득에서 공제 ²⁾
캐나다	손금산입	출자배당 가능 ³⁾	비분할적립금 과세
프랑스	손금산입	회사채 이자율	비분할적립금 과세
이탈리아	손금산입	우체국 금리인 2% 미만	비분할적립금 비과세 적립비율: ① 일반협동조합 70%, ② 소비자협동조합 45%, ③ 농업협동조합 80%
스페인	손금산입	스페인 국립은행의 기본 이자율	비분할적립금 비과세

- 주: 1) 전체 배당의 50% 이상이어야 함,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이용고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조특법 88조의 5)
 2) 출자금액의 4분의 1까지임
 3) 배당에 대한 제한은 없고 배당금을 협동조합에 재투자(출자)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안됨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최근 고용문제 해결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서의 협동협동조합제도가 2012년 12월 도입되었음
 - 2013년 11월 현재 3,148개가 설립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협동조합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협동조합제도 및 과세제도를 살펴보았음
 - 협동조합의 근거법이나 설립 형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조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본격화되었지만 협동조합 이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외환위기 이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이 본격화되었음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며, 1인 1표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 사업형태임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등 특정 사업이

차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현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세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일반법인과 과세상의 차이가 없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적용받음

□ 협동조합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에 별도의 조세지원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이 지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라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조세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거나 비분할적립금에 대하여 일부 비과세하는 사례도 있음

□ 협동조합이 고용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보건 및 교육 등 다양한 민간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그 중 조세지원제도는 사업 초기의 유동성 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조합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세수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유사한 형태의 사업 실체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야 함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영리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2012. 7.
-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2013.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 2013.
- 국회의원 김기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2013. 3. 1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본법 시행 1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종합정보시스템」구축으로 각종 정보 통합 서비스-」, 2013. 12. 2.
- 기획재정부, 「상생과 통합의 미래-협동조합과 함께」, 2012.
-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보도자료, 2013. 12. 29.
- , 「기본법 시행 1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운영-「종합정보시스템」구축으로 각종 정보 통합 서비스-」, 보도자료, 2013. 12. 2.
-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 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 길현종·류성민·임창규,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3.
- 설광언·김동석, 『협동조합기본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심태섭·김완석,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2012. 7.
- 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2012.
- 최혁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 전략」, 사회적경제센터, 2012.
- 충남발전연구원,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조사보고서』, 2013.
- 스페인 법인세법 중 협동조합관련 특별세제편
스페인 헌법 및 국가협동조합법
이탈리아 헌법
- 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 『中小企業組合ガイドブック』, 2013.

中小企業庁,「中小企業施策総覧」, 2010.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2013, 2013, pp. 935~936.

Cooperative Europ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1435/2003 on the Statute for European Cooperative Society(SCE),” 2010.

Monica Juarez Adler, “Enabling Policy Environments for Co-operative Development - A Comparative Experience,” Center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Institute of Urban Studies, University of Winnipeg, 2009.

Idana SALAZAR TERREROS, Giulio MALORGIO and Carmen GALVE GÓRRIZ, “Comparison between Spanish and Italian Regulations on Cooperative Firms: Traditional or Hybrid Model?,” 2009. 2.

<http://socialeconomyaz.org>

<http://www.minhap.gob.es>

세법연구 13-11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손원익 · 송은주 · 홍성열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1-77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71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